

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[손정자 의원 대표발의]

검토보고서

2024. 1. 25.

복지환경위원회

전문위원 서용관

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손정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장애인, 어린이, 임산부, 노인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, 공원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·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생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 함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대상 시설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의 근거를 규정 함 (안 제6조~제7조)
- 라. 자문, 시민참여, 포상, 시행규칙을 규정함 (안 제8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장애인복지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1. 16. ~ 1. 22.(6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건축물, 도로, 공원 등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환경 조성시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조례 제정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편리한 이동 및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 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
- 검토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내용은 없어 보이며 그밖에 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붙임1

관계법령

☑ 「장애인복지법」

- 제23조(편의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・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☑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장애인등"이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편의시설"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하고,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- 3. "시설주"(施設主)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를 말한다.
- 4. "시설주관기관"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교육감을 말한다.
- 5. "공원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
 - 나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
 - 다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
 - 라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
- 6. "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"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, 시설 및 그 부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.

- 7. "공동주택"이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.
- 8. "통신시설"이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「우편법」 제1조의 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) 다음 각 호의 자(이하 "시설주등"이라 한다)는 장애 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 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1. 시설주
 - 2.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처분(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)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
- 제4조(접근권)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,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7조(대상시설)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(이하 "대상시설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- 1. 공원
 - 2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 - 3. 공동주택
 - 4. 통신시설
 - 5.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- 제12조(설치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보고)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
 - 2. 대상시설의 건축・대수선(大修繕)・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
 - 3.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

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 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☑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교통약자"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교통수단"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.
 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(이하"버스"라 한다)
 - 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
 - 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
 - 라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
 - 마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
 - 바. 「해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
 - 사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
- 3. "여객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.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
- 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
- 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
- 라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

- 마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
- 바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
- 사. 「항만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
-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
- 4. "도로"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(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)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.
- 5. "교통사업자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도시철도법」, 「철도사업법」, 「궤도운송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공항시설법」, 「항만법」, 「해운법」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·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·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·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를말한다.
- 6. "교통행정기관"이란 교통수단의 운행·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·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- 7. "이동편의시설"이란 휠체어 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장애인을 위한 보도(步道),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,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- 8. "특별교통수단"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.
- 제3조(이동권)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│ 비용추계 관련 자료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-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
- 나. 재정 수반 요인
 - 제7조(사업지원)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
 - 2.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
 - 3.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
 - 4.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
 - 제9조(시민참여) ①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재정 수반에 관한 요인인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장애인복지과장 김현겸